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04. 1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4월 4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2. 4.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 영 배 교통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 등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2) 종전의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개정함(안 제3조제8호).
- (3)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문구 정비함(안 전반).

3. 검토보고 (김기영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을“각 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8호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4호 “기타 잡수입”을 “그외수입”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운영 기준 세입과목 명칭 개선에 따라 변경하였음.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된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며,

그 밖에 조례의 제명 등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